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

[시행 2017. 4. 6.] [해양수산부예규 제81호, 2017. 4. 6., 일부개정]

해양수산부(해양공간정책과), 044-200-5261, 5262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연안관리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) 해양수산부장관,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수립권자"라 한다)은 「연안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

- 제3조(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에 의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·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·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(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.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1.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
 - 2.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
 - 3.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,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지역계획의 내용) ①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·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(이하 "통합계획"이라 한다)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·군 관할 연안을 단위로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계획의 개요
 - 2.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
 - 3.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
 - 4.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
 - 5.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
 - 6.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
 - 7.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〈전문개정〉
 - 8.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
 - 9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도면으로 작성·관리할 것
 - 가.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
 - 나. 자연해안관리도
 - 다. 연안관리지역계획도
 - ②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특성,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수요 등이 전혀 없어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통합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계획 수립시까지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.
- 제5조(공청회의 개최)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,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공청회의 개최목적
 - 2.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 - 3.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
 - 4. 의견 발표자에 관한 사항
 - 5.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
 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② 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주재하여야 한다.
 - ③ 수립권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발표자를 선정한 결과는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수립권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역계획의 변경) ① 수립권자는 수립·고시된 지역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.
 - 1. 통합계획 중 관할 연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
 - 2.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3.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4.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개발수요 또는 복원수요가 변경된 경우
 - 5. 그 밖에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.
 - 1.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
 - 2.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
 - 3.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·보완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-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계획의 수립·변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·변경·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·도면
 - 나.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·후의 비교표
 - 2. 해도. 지형도 등 참고자료
- 제7조(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)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, 지구·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·변경, 허가·인가·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② 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,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·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연안에서 보전·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"란 연안을 보전·관리,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, 종합계획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, 구역·지구·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·인가·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.
-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·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, 구역·지구·지역 및 허가·인가·면허 또는 신고,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보전·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.

제3장 지역계획의 세부작성 방법

제1절 지역계획의 개요 및 연안의 범위

제8조(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) 지역계획안은 별표 2의 지역계획안의 작성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립배경) 지역계획 수립배경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.

- 1. 연안자원 및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
- 2. 연안이용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필요성
- 3. 통합계획의 확립
- 4. 자연해안관리목표, 연안용도해역,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도입
- 5. 지역계획 수립(변경) 경위 및 경과
- 제10조(수립목적)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
 - 2. 다양한 연안이용·개발수요의 적정관리
 - 3.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
 - 4.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·참여의 장 창출
- 제11조(계획 대상 연안의 설정) ①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에 따른 관할 연안에 계획대상 연안을 중첩하여 도면에 표시한다.
 - ② 관할 연안의 일부를 계획대상 연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, 그 계획대상 연안에 포함하지 않은 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한다.
 - 1. 행정구역 및 지형
 - 2.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
 - 3. 하천의 수계, 조류 및 해저지형
 - 4.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
 - 5. 수산업, 광업,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
- 7. 사회·경제적 활동의 연관성

제2절 관련 계획의 검토

- 제12조(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)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역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.
 - 1. 연안육역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
 - 2. 연안해역: 「수산자원관리법」, 「수산업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
 - ② 해당 시·군·구의 연안관리조례, 도시계획조례, 자연환경보전조례, 환경기본조례 등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 연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.
- 제13조(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)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계획, 광역 및 도 단위 계획, 향후 5년간 법 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계획: 국토종합계획, 연안통합관리계획, 연안정비계획,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, 항만기본계획, 어항계획 등
 - 2. 광역시 및 도 계획: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, 광역관광개발계획, 광역지자체 관광개발계획 등
 - 3.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(사업명, 추진법률, 위치(상세히), 면적(육상, 해상 구분), 사업기간, 사업비, 현 추진상황 등)
 - ②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각종 법률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. 이 표에 누락된 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, 지역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연안현황 분석) ① 연안현황은 자연환경의 특성, 연안의 이용·개발 현황, 연안의 보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야 한다.
 - 1. 자연환경의 특성
 - 가. 위치 및 기후
 - 나. 지형 및 경관
 - 다. 해역의 물리환경 특성
 - 라. 해안(해안선, 바닷가, 간석지)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
 - 마. 해양생태계 특성(저서, 부유, 포유, 보호종 등)
 - 바. 해양수질현황 (최근 10년간 해역의 수온변화, 계절별 염분변화, 용존산소변화, 산소요구량 변화, 용존무기질소 변화 , 무기인 변화 등)
 - 2. 연안의 이용·개발 현황 및 수요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행정구역 및 인구(최근 5년간의 변화 포함)
- 나. 토지이용현황(지목별, 용도지역별 현황)
- 다. 지역경제현황(산업구조, 농·축산업 등)
- 라. 공유수면 점·사용현황
- 마. 어업현황(어가인구, 어업권, 선박보유, 양식장 현황, 수산물 생산량)
- 바. 항만 및 어항현황(지정 및 시설 현황)
- 사. 연안이용·개발사업 현황 (관련 도면 포함)
- 아. 기타 관할 연안의 이용·개발 수요
- 3. 연안의 관리 현황
 - 가. 연안육역·해역의 보호구역 지정·관리 현황
 - 나.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계획 (관련 도면 포함)
 - 다. 연안재해 대응사업 추진현황
 - 라. 연안 이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
 - 마. 연안 지역이해관계자 분석 (설문조사 또는 협의회 개최 등)
 - 바.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 현황
- ② 이때 사용할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,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관할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)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분석하여야 한다.

- 1. 연안환경·생태계 부문
- 2. 연안이용·개발부문
- 3.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
- 4. 연안 거버넌스 부문
- 제16조(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 등) ① 수립권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해당 권역의 기본목표, 계획대상 연안의 여건 및 전망,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세부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세부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, 생략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
 - 1.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
 - 2.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
 - 3. 연안 거버넌스 구축
 - 4.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

제3절 연안용도해역의 지정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7조(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) 수립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특성, 이용개발현황,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장래의 보전·이용·개발수요, 관할 연안의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, 특수연안해역, 보전연안해역, 관리연안해역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- **제18조**(이용연안해역) ① 제17조에 따른 이용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.
 - 1. 연안관리법 제17조제1항 지정의제 구역
 - 2. 이용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이용 및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(단,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 구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)
- 제19조(특수연안해역) ① 제17조에 따른 특수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.
 - 1.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
 - 2.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.
 - 1.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지정의제 구역
 - 2. 특수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(단,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특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)
- 제20조(보전연안해역) ① 제17조에 따른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,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말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.
 - 1. 연안관리법 제17조제3항 지정의제 구역
 - 2. 보전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,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(단,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보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)
- 제21조(관리연안해역) ① 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.
 - ②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, 이용·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·이용·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.
 - ③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. 단,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,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⑤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,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·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.
- ⑥ 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절 연안해역 기능구의 지정・관리

제22조(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)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·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·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.

1. 이용연안해역

- 가. 항만구: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나. 항로구: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다. 어항구: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라. 레저관광구: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마. 해수욕장구: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바. 광물자원구: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사. 해중(海中)문화시설구 ; 수중 수족관.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

2. 특수연안해역

- 가. 해양수질관리구: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나. 해양조사구: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다. 재해관리구: 해일, 파랑,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(赤潮)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
- 라. 군사시설구: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마. 산업시설구: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(油類)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(기간산업)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바. 해양환경복원구: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

3. 보전연안해역

- 가. 수산생물자원보호구: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나. 해양생태보호구: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다. 경관보호구: 해안, 해상, 해중(海中)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라. 공원구: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- 마. 어장구: 마을 어업,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바. 해양문화자원보존구: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

제23조(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)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만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「항만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
- 2.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에 제5조제1항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
- 3. 「항만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
- 4. 「마리나항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」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
- 5. 그 밖에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로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〈전문개정〉
- 2. 「해운법」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
- 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〈전문개정〉
- 4. 「유선및도선사업법」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
- 5.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항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어촌・어항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
- 2. 현지어선 10척 이상인 항·포구
- 3. 그 밖에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레저관광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관광진흥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
- 2.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6호에 따른 관광휴양단지
- 3. 「어촌·어항법」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
- 4. 「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구역
- 5.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
- 6. 「유선및도선사업법」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
- 7. 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이용구역
- 8. 법정계획 상 관광사업구역
- 9. 어촌체험시설 설치구역
-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수욕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〈전문개정〉
- 2. 그 밖에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광물자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골재채취법」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
- 2. 「해저광물자원개발법」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「광업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 중 향후 5년 이내 채굴 계획이 있는 지역
- ⑦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중(海中)문화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박물관
- 2. 수중수족관
- 3. 그 밖에 해중문화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
제24조(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)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수질관리 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에 의한 특별관리해역
- 2. 해양수질이 악화 혹은 오염이 심한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
- 3. 온배수 및 냉배수 취·배수 주변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
- 4. 그 밖에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조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해양수질이 악화, 해양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측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
- 2. 지속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
- 3. 국가차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
- 4. 영토관리 차원의 영해 기점 관련 주변 해역
- 5. 그 밖에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재해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- 2. 과거 지진폭풍해일, 조위 상승,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하여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
- 3. 과거 태풍,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,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
- 4.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
- 5. 그 밖에 연안재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군사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
- 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및 군항 보호구역
-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산업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·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
- 2. 해양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공간 및 주변 해역
- 3.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, 저장, 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간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일정 범위 내 해역
- 4. 천연가스·원유 수송 파이프라인과 전력·통신 관련 해저케이블 설치 주변 해역
-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환경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삭제
- 2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의한 습지개선지역
- 3.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 구역 혹은 예정 구역
- 4. 그 밖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
제25조(보전연안해역의 기능구)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 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
- 2.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의한 환경보전해역
- 3.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의한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
- 4. 그 밖에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생태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
- 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·경관보전지역 중 다음호에 해당하는 지역
 - 가.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
 - 나.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
- 3. 「습지보호법」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
 - 가.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
 - 나.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이 서식·도래하는 지역
- 4.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
- 5. 「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특정도서의 주변해역
- 6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기념물 중 동물의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 및 식물의 자생지
- 7.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지역
- 8. 갯벌, 하구 등 중요한 해양생물 산란 및 서식지
- 9. 그 밖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경관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
- 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·경관보전지역 중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
- 3. 「습지보호법」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특이한 경관적·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
- 4. 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에 의한 해중경관지구
- 5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기념물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
 - 가.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
 - 나. 지형, 지질, 광물, 동굴,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곳
- 6. 대표적이고 우수한 해안지형·지질분포 해역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7. 산호초, 해조류 등 독특한 해중경관해역
- 8.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성 바닷가
- 9. 그 밖에 해안, 해상, 해중(海中) 또는 해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④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⑤ 「수산업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(해조류양식어업, 패류양식어업, 어류등양식어업, 복합양식어업, 협동양식어업,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)에 해당하는 어장(단,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)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⑥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문화자원보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역사·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(보호구역 포함)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- 2. 해양문화·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분포해역
- 3. 해저유물 분포해역
- 4.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제26조(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) ① 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:5,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단 1:5,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:25,000 또는 1:50,000 지형도,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 - ②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등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3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.

제5절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

- 제27조(자연해안관리목표) ① 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, 인공바닷가, 자연해안선, 인공해안선,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,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도면화하여야 한다.
 - ② 해안현황도는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수립권자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다.
 - ③ 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. 다만,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.
 - ④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,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 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.
 - ⑤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,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.
 - ⑥ 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,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,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⑦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/5,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,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⑧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, 방법,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5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

제6절 연안관리 세부추진사항

제28조(연안관리 방안) ① 지역계획에는 통합계획 시행을 위한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② 연안관리 방안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,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연안관리 방안은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,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, 연안 거버넌스 구축,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고, 별표 6의 지역계획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 또한 세부내용은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제시한다.

제4장 지역계획의 관리

- 제29조(주기적 점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은 별표 7과 같다.
- 제30조(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,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,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,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,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,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.
- 제31조(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연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32조(관리연안해역의 간주) ① 지역계획 대상 연안에서 제외된 해역이나 연안의 용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계획 공간이 중복되는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.

제33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81호, 2017. 4. 6. 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